

◆ D-39 노동조합의 정의

1. 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필수요건)이라 하며, 위법 제2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소극적요건(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즉,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은 첫째,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자하는 자가 참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관리자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명령·지휘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자를 이익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부장, 차장, 과장급이상은 그 소속에 불문하고 모두 이에 해당되며, 인사과, 노무과, 기획과, 감사과, 경리과 등의 staff 부서에서 일하는 대리급 이상과 중역실 비서등은 모두 이에 해당됨.¹⁾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영업소장, 지점장은 소속직원 및 보험외판원을 감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된다는 판결례가 있음.

1) 『신노사관계론』, 김 성수, 1998. 3, p138참조

둘째, 조합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경비라 함은 조합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조합사무소의 설비·비품 등의 비용과 인건비, 즉, 조합전임자의 급여, 출장비지급가 해당됨.

셋째,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단체협상을 통한 근로조건을 유지·개선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임

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노동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실질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신고증을 교부, 서류비치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위와같이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과 형식적요건을 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하며, 법외노조는 노노법 제7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할 수 없음.